

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보조 서비스(제7조제4항 관련)

1. 교통수단

서비스 교통사업자	발권지원 (탑승수속)	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	승·하차 지원	좌석안내	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이용 및 이동 지원	출·입국 수속 지원
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			○	○		
시외버스			○	○		
철도			○	○	○	
항공기	○	○	○	○	○	○
선박	○	○	○	○	○	○

2. 여객시설

서비스 교통사업자	발권지원 (탑승 수속)	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 용지원	승·하차 지원	목적지(환승지) 하차지원
여객자동차 터미널	○	○	○	
역사	철도	○	○	○
	도시철도 광역전철	○	○	○
공항	○	○		
항만	○	○		

비고

1. "이동편의시설"이란 휠체어 리프트, 승강기, 에스컬레이터 등을 말한다.
2. "승하차 지원"이란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나 높이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제공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.